

2016년 거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거제시 재정공시 제2016-01호(2016. 2. 29.)

거 제 시 장

-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6,81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8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9,473억원)보다 2,65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41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3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6억원입니다.
-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5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66%입니다.
-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6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조선경기위축으로 향후 세수 증가폭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금 납부 독려 등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확충과 예산절감 등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4003000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전영재(055-639-3127)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제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815	6,526	289	9,473	8,845	628
	세출예산	6,815	6,526	289	9,473	8,845	628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41.53 (34.26)	41.52 (37.06)	0.01 (△2.80)	36.93 (31.62)	35.46 (30.29)	1.47 (1.33)
	재정자주도[당초]	64.66 (57.39)	65.78 (58.40)	1.12 (△1.01)	63.81 (58.50)	63.12 (57.95)	0.69 (0.55)
	통합재정수지[당초]	66	71	△5	149	177	△27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시-2(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1,538	573,572	68,193	5,038	34,73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38,010	525,083	630,948	652,644	681,5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합 계	434,105	100	441,398	100	530,938	100	555,225	100	573,572	100
지방세	136,507	31.45	150,523	34.10	163,987	30.89	170,037	30.63	170,000	29.64
세외수입	44,049	10.14	49,090	11.12	26,515	4.99	18,876	3.40	26,494	4.62
지방교부세	87,759	20.22	73,047	16.55	73,888	13.92	91,746	16.52	89,700	15.64
조정교부금 등	26,000	5.99	28,800	6.53	31,000	5.84	42,987	7.74	43,000	7.50
보조금	139,790	32.20	139,938	31.70	190,816	35.94	189,984	34.22	202,696	35.34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44,732	8.42	41,595	7.49	41,682	7.2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1,538	573,572	68,193	5,038	34,73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38,010	525,083	630,948	652,644	681,5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합 계	434,105	100	441,398	100	530,938	100	555,225	100	573,572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6,235	8.35	44,317	10.04	48,364	9.11	54,300	9.78	49,859	8.69
공공질서 및 안전	9,775	2.25	13,790	3.12	10,669	2.01	9,280	1.67	11,232	1.96
교 육	9,422	2.17	9,652	2.19	12,760	2.40	6,254	1.12	9,477	1.65
문 화 및 관 광	28,333	6.53	23,704	5.37	27,723	5.22	24,581	4.42	27,375	4.77
환 경 보 호	77,505	17.85	44,821	10.15	47,570	8.96	57,470	10.35	60,917	10.62
사 회 복 지	84,867	19.55	93,423	21.16	134,834	25.40	143,113	25.77	154,282	26.90
보 건	7,027	1.62	7,265	1.65	8,064	1.52	10,025	1.81	9,897	1.73
농 립 해 양 수 산	54,997	12.67	69,236	15.69	74,154	13.97	75,831	13.66	75,635	13.19
산 업 · 중 소 기 업	10,116	2.33	9,483	2.15	13,250	2.50	4,758	0.86	4,296	0.75
수 송 및 교 통	29,042	6.69	29,452	6.67	43,827	8.25	55,507	10.00	45,394	7.9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4,226	3.28	20,085	4.55	26,610	5.01	23,073	4.16	32,813	5.72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7,797	1.79	5,289	1.20	5,889	1.11	8,978	1.62	6,600	1.15
기 타	64,763	14.92	70,881	16.06	77,224	14.54	82,055	14.78	85,795	14.9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23,502	756,820	766,771	780,128	794,286	3,821,507	2.40%
자 체 수 입	241,644	246,693	251,577	269,759	274,839	1,284,512	3.30%
의 존 수 입	392,718	416,455	425,455	418,898	425,798	2,079,324	2.00%
지 방 채	2,958	4,000	0	0	0	6,958	35.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182	89,672	89,739	91,471	93,649	450,713	2.10%
세 출	723,503	756,820	766,771	780,128	794,286	3,821,507	2.40%
경 상 지 출	154,100	150,507	156,071	164,835	163,516	789,028	1.50%
사 업 수 요	569,403	606,313	610,700	615,293	630,770	3,032,479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686,766	717,701	30,935	4.50
거제시	652,644	681,538	28,894	4.43
교육청	0	0	0	0
공사·공단	21,750	22,192	442	2.03
출자·출연기관	12,372	13,971	1,599	12.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 출자출연기관(2개) : 거제문화예술재단,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1.53 (34.26)	573,572 (573,572)	238,176 (196,494)	335,396 (335,396)	0	0 (41,682)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1.59	45.22	44.31 (35.88)	41.52 (34.02)	41.53 (34.26)
최종예산	47.97	44.98	44.38 (38.77)	43.21 (37.0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타 자치단체 대비 우리 시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6 (57.39)	573,572 (573,572)	370,876 (329,193)	202,696 (202,696)	0	0 (41,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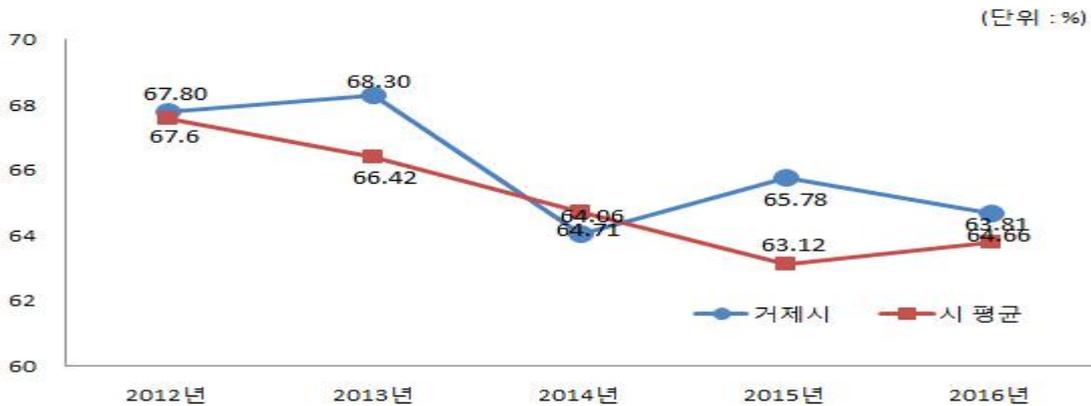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7.80	68.30	64.06 (55.64)	65.78 (58.40)	64.66 (57.39)
최종예산	68.54	65.58	65.27 (59.66)	64.55 (58.29)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다 2014년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국고 보조금, 순세계잉여금등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94,004	610,987	0	12,370	12,370	35,991	623,357	-29,353	6,638
일반회계	541,004	534,628	0	12,270	12,270	28,830	546,898	-5,894	22,936
기타 특별회계	1,928	4,938	0	0	0	1,836	4,938	-3,010	-1,174
공기업 특별회계	49,868	68,193	0	0	0	5,325	68,193	-18,325	-13,000
기 금	1,204	3,228	0	100	100	0	3,328	-2,124	-2,124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9,677	-17,728	-34,599	-28,815	-29,353
통합재정수지 2	6,723	5,157	2,915	7,052	6,638

☞ 2016년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폭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건전재정운용노력이 필요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1	62,494
여성정책추진사업	17	44,2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18,2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do?menuCd=DOM_000001701006000000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81,538	2,162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62	
교육체육과	남부면 명사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교육체육과	거제면 화원마을 운동기구 설치	15	"
산림녹지과	일운면 시비동산 정비공사	20	"
산림녹지과	일운면 수정마을 산책로 정비공사	20	"
산림녹지과	연초면 죽전마을 주민쉼터 조성공사	30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망산 탐방로 정비공사	20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해안로 체육공원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총명사 뒤편 웬스 설치공사	15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해맞이 행사장 정자주변 정비공사	25	"
산림녹지과	마전동 삼밭, 윤개공원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능포동 장미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30	"
산림녹지과	옥포1동 시비공원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옥포1동 국사봉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	15	"
산림녹지과	옥포2동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	10	"
산림녹지과	옥포2동 산북도로변 개미골 입구 소공원 조성 공사	30	"
산림녹지과	장평동 덕산아내1차아파트 옆 오솔길 정비 공사	10	"
산림녹지과	장평동 무궁화동산 정비공사	10	"
산림녹지과	고현동 시내 가로수 지주 정비공사	24	"
산림녹지과	중곡동 가로수 정비사업	24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계획과	장승포동 청사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30	"
도시계획과	능포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변 벽화그리기 사업	30	"
도시계획과	옥포2동 혜성아파트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	20	"
도 로 과	일운면 공곶이 진입로 정비공사	25	"
도 로 과	일운면 와현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도 로 과	동부면 산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동부면 유천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
도 로 과	남부면 도장포마을 안길 데크설치공사	30	"
도 로 과	거제면 고당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거제면 옥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도 로 과	거제면 동림마을 안길 확장공사	20	"
도 로 과	사등면 신전마을회관 진입도로 확장공사	30	"
도 로 과	연초면 효촌마을 안길 확장공사	30	"
도 로 과	하청면 서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2	"
도 로 과	하청면 중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5	"
도 로 과	장목면 북골마을 굴곡도로 개선공사	20	"
도 로 과	장목면 대계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도 로 과	장목면 매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
도 로 과	마전동 장승로 보도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마전동 장승로 도로측구 정비공사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 로 과	마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능포동 롯데캐슬아파트 후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0	"
도 로 과	아주동 용소3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30	"
도 로 과	아주동 도시계획도로(중로2-29호선)범면유실 보수공사	30	"
도 로 과	옥포1동 국도14호선 안전휀스 설치공사	20	"
도 로 과	옥포1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측구 정비	30	"
도 로 과	옥포1동 애니콜택시 옆 배수로 정비	15	"
도 로 과	옥포1동 오븐마루 앞 보도 및 배수시설 정비	10	"
도 로 과	옥포2동 도시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 로 과	옥포2동 도시도로변 파손 인도 보수공사	30	"
도 로 과	장평동 장평농협 인근 도로정비공사	30	"
도 로 과	장평동 장평대로 보도 정비공사	10	"
도 로 과	장평동 프라다호텔 뒷편 도로 정비공사	20	"
도 로 과	장평동 장평회관뒷편 도로정비공사	20	"
도 로 과	중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20	"
도 로 과	중곡동 덕산2차베스트타운 안전휀스 설치공사	20	"
도 로 과	중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자전거 거치대	2	"
도 로 과	상문동 덕산3차아파트 진입로 정비 및 안전 시설물 설치	25	"
도 로 과	상문동 윗담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 로 과	수양동 제산1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
도 로 과	일운면 망양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및 보안등 설치	20	"
도 로 과	능포동 시원빌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2	"
도 로 과	아주동 도시개발구역 제1,3공원 보안등 설치	25	"
도 로 과	아주동 도시개발구역내 보안등 설치공사	25	"
도 로 과	장평동 양지초등학교 통학로 보안등 설치공사	20	"
도 로 과	고현동 독봉산 웰빙공원 입구 보안등 설치공사	30	"
농업정책과	일운면 신촌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동부면 산촌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동부면 영북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남부면 여차마을 농로 개설공사	25	"
농업정책과	거제면 산전마을 구거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둔덕면 죽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2개소)	25	"
농업정책과	둔덕면 하둔마을 배수로 법면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둔덕면 하둔마을 농로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20	"
농업정책과	둔덕면 내평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10	"
농업정책과	둔덕면 아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사등면 두동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30	"
농업정책과	사등면 성내마을 구숫골 농로 확포장 공사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업정책과	사등면 오량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30	"
농업정책과	연초면 연행마을 농로 확장공사	30	"
농업정책과	연초면 하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하청면 해안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하청면 창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15	"
농업정책과	하청면 성동마을 도로 포장공사	15	"
농업정책과	하청면 실전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23	"
농업정책과	하청면 대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10	"
농업정책과	장목면 장동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장목면 송진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상문동 아랫마을 농로 개설공사	10	"
농업정책과	상문동 봉시덕골 농로 개설공사	15	"
농업정책과	상문동 윗담 농수로 신설공사	20	"
농업정책과	상문동 배합골 구거 정비공사	25	"
농업정책과	수양동 양정마을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수양동 해명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상하수도과	남부면 다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5	"
상하수도과	둔덕면 유지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공사	25	"
상하수도과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외 1개소 횡단 배수로 정비공사	1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2000000000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3	80	179	183	578,609	563,307	15,304
의회사무국	1	1	2	1	1,391	1,427	-36
기획예산 담당관	1	1	3	3	28,996	31,027	-2,031
감사법무 담당관	1	1	2	2	313	319	-5
전략사업 담당관	1	2	6	2	4,096	7,194	-3,098
시민고충 처리담당관	1	3	4	3	176	170	6
국가산단 추진단	1	1	1	1	59	605	-546
행정국	1	10	26	24	98,649	94,459	4,190
주민생활국	1	19	47	41	178,545	164,572	13,974
해양조선 관광국	1	11	26	23	66,118	70,713	-4,595
안전도시국	1	17	32	35	98,947	96,930	2,016
보건소	1	2	6	11	10,254	10,657	-403
농업기술 센터	1	4	9	24	26,948	25,112	1,836
환경사업소	1	8	15	13	58,129	53,840	4,289
읍면동	0	0	0	0	5,988	6282	-293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3000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1.53 (34.26)	64.66 (57.39)	26.91	27	51.31	31.31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3000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	79.2	0
	부단체장	56.1	56.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1	341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5.8	85.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의원국외여비	52	52	0
지방보조금		17,991	10,792	-7,19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38	1,33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5	1,201	-204
공무원 일·숙직비		286	286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 가군 기준 시장 79,200천원, 부시장 56,1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기준으로 2016년 기준액 341,000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가능) 기본 - 16명*4,800천원 = 76,800천원, 예결특위 - 9명*1,000천원 = 9,0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활동비 - 월2,310천원*1명*12월 = 27,720천원
 부의장 - 월1,150천원*1명*12월 = 13,800천원
 상임위원장 - 월750천원*3명*12월 = 27,000천원
 예결위원장 - 월750천원*1명*4회 = 3,000천원

· 의원국외여비 : 의원정수*2,000천원(기준액),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내에서 자율조정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기본 - 16명*2,500천원 = 40,000천원, 추가(자매결연) - 40,000천원*30% = 12,000천원

· 지방보조금 :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2016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7,991백만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통·리장 - 기본수당 월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반장수당 - 연5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도농형기초단체 기준액(1인당 평균) 1,018천원
 87천원(우리시 1인기준)*1,380명 = 120,06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비 1일당 50천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천원 이내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 일직수당 : 60천원*13명*117일 = 91,260천원

- 숙직수당(평일) : 50천원*10명*250일 = 125,000천원

- 숙직수당(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 60천원*10명*116일 = 69,600천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595	-3,971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2,350	4,595
인건비 절감	0	169
지방의회경비 절감	31	31
업무추진비 절감	50	1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07	83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08	2,525
지방청사 관리·운영	1,970	1,22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205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565	-3,9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543	1,675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32	-3,689
경상세외수입 확충	282	32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748	-1,664
탄력세율 적용	-708	-618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거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없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거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